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15. . .	
연월일	(제 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0000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장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심사관을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자의 출원과 심사결과를 오래 기다리기 곤란한 시한부 환자의 출원에 대하여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기술에 대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인 심사관 자격의 마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의 심사과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심사과장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인 심사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고령자·시한부 출원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포함(안 제9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심사 대상을 65세 이상의 고

령자 또는 시한부 환자에 의한 출원과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사목 중 “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를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9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가. 65세 이상 고령자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 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각종 사고를 예방·대비하여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법 제9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p> <p>1.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법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u> 이내에 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p> <p style="padding-left: 20px;">아. ~ 머. (생략)</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 심사</p>	<p>제7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① ----- ----- ----- ----- ----- --.</p> <p>1. -----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u>----- -----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아. ~ 머.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심사관 등의 자격) ① -----</p>

<신 설>

<신 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출원

가. 65세 이상 고령자

나. 건강에 중대한 이상이 있어 우선심사를 받지 않고서는 특허여부결정까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각종 사고를 예방·대비하여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연 락 처	(042) 481 - 5399